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규정번호	3-2-3
제정일자	2011.11.21
개정일자	2019.11.14
책임부서/팀·계	평생교육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14. 개정>

제2장 개설과목 및 학생정원

제2조(개설과목 및 정원) 개설과목 및 정원은 교육부 학점은행제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습과목평가인정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허가를 득하여 결정한다. <2017.4.14. 개정> <2019.11.14. 개정>

제3장 수업연한

제3조(수업연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학기별로 한다.

제4장 수업일수 및 휴업

제4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15주(각 과목당 45시간)이상으로 한다.

제5조(휴업) 휴업일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개교기념일
2.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6조(임시휴업) ① 총장은 비상재해 또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휴업 및 휴업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모집 및 지원절차

제7조(모집) 모집은 각 과목별로 한다.

제8조(수강자격)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및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9.11.14. 개정>

제9조(지원절차)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사진 반명함판 1매
3. 고등학교이상 졸업증명서(검정고시 출신은 합격증명서)
4. 기타 첨부 서류

제10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전형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2019.11.14. 개정>

제11조(수강허가) 수강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수강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 기일내에 수강을 위한 소

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장 수강신청 및 등록

제12조(등록) 수강생은 매 학기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절차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2019.11.14. 개정>

제13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원서 접수 시에 신청한다. 수강 학점은 시간제등록포함 년간 42학점(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9.11.14. 개정>

② 해당과목 수강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강할 수 없다.

제7장 교과목 이수 및 성적

제14조(교과목이수시간) 이수시간은 교과목당 45시간(3학점기준)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제15조(시험) 시험은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응시자격) 각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20%이상 결석하면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7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중간·기말고사, 수시평가, 과제물, 출석 등으로 평가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18조(교과이수인정 및 취소) ① 학업성적 60점 이상이고 출석률이 전체출석 일수의 80%이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를 인정한다.

② 이수가 인정된 교과목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8장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제19조(학점은행제 학위수여의조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2년제는 교양 15학점이상, 전공 45학점이상 총 80학점 이상, 3년제는 교양 21학점이상, 전공 54학점이상 총 120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2년제 48학점이상, 3년제 65학점이상인자

② 제1항 제3호의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③ 본 대학의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시 학점인정 범위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2019.11.14. 개정>

제20조(학점은행제 학위수여의 절차) 학칙 제34조의3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학칙사본, 학위증서식을 첨부하여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11.14. 개정>

제21조(학점은행제 학위수여) ① 학칙 제34조의3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 및 본 대학 졸업 사정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2019.11.14. 개정>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16.05.23>

제9장 학습과정 운영

제22조(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 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 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출석 및 수업 관리)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 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신안산대학교 학점은행제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2019.11.14. 개정>

제24조(성적평가) ①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신안산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2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학적 관리 등) ① 학습과정 시작일 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 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창구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 등)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16.05.23>

제10장(학습자활동 및 장학금)

제28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29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0조(장학금) ① 학습 태도와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과정의 장학금 종류별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으며, 따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017.4.14. 신설> <2019.11.14. 개정>

제11장(수강료 반환)

제31조(학습비반환)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2016.05.23. 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